

산학협동위원회 규정

<2012. 1. 1. 제정>

<2015. 1. 1. 개정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·학·연 친선교류사업
2. 산·학·연 협동 세미나 및 연구 발표
3. 산·학·연 공동연구 기획 및 추진
4. 산업체협의회 활성화 지원
5. 기타사항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동이사 로 보하고,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, 간사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 (친선교류가 목적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않음)

제6조(산업체협의회 구성) 산학연 협동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회와 별도로 산업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산업체협의회는 학회 내 조직으로서 이에 관한 운영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